

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

구 분		내 용
승인번호		110025
승인일자		2007년 5월 9일
통계종류		가공통계
조사대상	지역	■ 전국
	범위	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,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,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 (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통계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국내미체류자는 제외)
	보고단위	■ 개인
	보고대상 규모	■ 전국 약222만명
보고항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총괄 : 유형* 및 지역별, 연령별 현황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,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, 외국인주민 자녀 ■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: 체류기간별, 국적별, 유형별* 현황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외국인근로자, 결혼이민자, 유학생, 외국국적동포, 기타 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: 국적취득 경과 기간별, 이전국적별 현황 ■ 외국인주민 자녀 : 유형별*, 연령별, 부모의 국적별 현황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귀화 및 외국국적, 국내출생 ■ 다문화가구 현황
기초자료 및 작성방법		■ 행정자료(출입국기록, 외국인등록부,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부 등)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인구총조사(통계청)와 연계하여 작성
작성기준	기준시점	■ 작성기준년도 11월 1일 0시
	작성기간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9월~10월
	작성주기	■ 1년
공표	공표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11월
	공표주기	■ 1년
	공표방법	■ 간행물(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)
작성체계		■ 통계청(인구총조사과)→행정안전부(사회통합지원과)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통계작성기준일 현재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제외 ■ '15.1.1. 이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 받아 통계를 작성하였으나, '15.11.1.기준 부터 통계부터 인구총조사(통계청)에서 외국인주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■ 국적,체류자격,지역,성별의 유출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(*)처리
주요 용어해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: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90일 초과 체류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근로자 : 체류자격이 교수 등 취업분야(E-1~E7, E9~E10), 방문취업(H-2)인 자 - 결혼이민자 :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- 유학생 : 체류자격이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 중 '대학부설 어학원 연수(D-4-1), 외국어연수생(D-4-7)인 자 - 외국국적동포 : 체류자격이 재외동포(F-4) 중 국내 거소신고자 - 기타 : 기업투자,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,결혼이민자,유학생,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(지역별,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,도, 시,군,구 현황에 안분) ■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: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■ 외국인주민 자녀 : '한국국적을 취득한 자'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'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'의 자녀(미성년자만 집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외국인주민자녀(출생)은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(출생에 의한 국적취득)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■ 다문화가구 :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(귀화자 포함)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(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)
주요 연혁		■ (2007년)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작성 승인(통계청)